

수수료 (제51조제1항 관련)

구분	수수료	
	전자민원의 경우	방문·우편 등의 경우
1.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		
가. 마약류제조업자·마약류원료사용자·마약류수출입업자·원료물질제조업자·원료물질수출입업자	81,000원	90,000원
나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	31,000원	35,000원
다. 마약류도매업자·대마재배자	31,000원	35,000원
2. 마약류관리자 지정	12,000원	14,000원
3.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변경 허가		
가. 마약류제조업자·마약류원료사용자·마약류수출입업자·원료물질제조업자·원료물질수출입업자	40,000원	45,000원
나.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	13,000원	15,000원
다. 마약류도매업자·대마재배자	13,000원	15,000원
4. 마약류관리자 변경지정	12,000원	14,000원
5.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증 재발급	25,000원	28,000원
6. 마약류관리자 지정서 재발급	10,000원	12,000원
7. 마약류의 수출품목 허가	108,000원	120,000원
8. 마약류의 수출품목 변경허가	27,000원	30,000원
9. 마약류·원료물질 수입허가 공인증명	25,000원	28,000원